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2020. 9.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08
----------	--------

2020. 9. 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환경과)
- 나. 제 출 일 : 2020. 8. 25.
- 다. 회 부 일 : 2020. 8. 26.

2. 제출이유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 다.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안 제13조)
- 마.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에너지법」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3) 「집단에너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7. 2.~ 2020. 7. 22.(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자율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있음.(불수용)

⇒ “안 제4조 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으나 에너지 복지는 분야별 지원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에 지원해야하는 사항으로 성별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불수용 처리함.

- 5) 위원회 사전심사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체결 이후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적 행태로서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대비 37% 감축하기로 선언한 바 있음.
-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탈석탄 선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역에너지정책 수립을 강조하여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제정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5개,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마포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정부의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책무를 인용하여 세부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공부분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 8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한 마포구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구민 교육, 홍보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의견

- 현재 원자력 발전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등의 에너지 생산과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역의 에너지 이용혜택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적 계획수립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연동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신에너지(3종)	재생에너지(8종)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 표.1 신·재생에너지 현황¹⁾ >

- 향후, 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마련해야 할 것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관 계 법 령]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